

학교생활규정



정 읍 여 자 중 학 교

정읍여자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2011. 09. 01

제5차 개정 2015. 12. 18

제6차 개정 2016. 12. 19

제7차 개정 2017. 08. 3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정읍여자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학생인권조례」, 본교 학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북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을 통하여 제한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학생 생활

제6조 (학생 인권 보호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보호한다.
- ② 학생의 인권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가진다.
- ② 학생은 성적, 징계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5조 제④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및 학교 운영 등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③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별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월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④ 학교는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급식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급식재료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지킨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⑨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경우 제26조(전자기기 사용)를 준용한다.

제21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소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제2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은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23조(용모) 용모와 복장에 관한 규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① 학생의 두발의 길이는 자율로 하되, 염색과 파마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 염색 또는 탈색의 경우 짙은 갈색(그레이 레벨 스케일 5도 이내) 범위에서 허용한다.
2. 파마의 경우 C컬 라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 ② 복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협의 하에 지정한 색상과 모양, 규격을 맞게 교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한다. 교복은 동복, 하복, 춘추복으로 구분하며, 생활복은 하복의 경우 상의로 흰색 반팔, 하의는 남색 반바지로 한다. 단정한 복장의 최소 기준은 블라우스, 넥타이, 치마 또는 바지로 한다. 단, 체육활동 등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할 수 있다.

1. 교복, 생활복의 색상과 모양 및 착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동복 : 지정복으로 상의는 진한 남색 하의는 체크무늬가 있는 남색 치마와 남색 바지이며, 상의 안에 흰색 블라우스와 넥타이를 매고 치마, 바지 속에 넣어 입어야 한다. 또한 블라우스 위에 짙은 남색 조끼를 덧입을 수 있다. 단 혹한기에는 상의 위에 점퍼류 등 겉옷을 덧입을 수 있다.

나. 하복 : 지정복으로 상의는 흰색 반팔 블라우스 또는 흰색 반팔 생활복으로 하며, 하의는 체크무늬가 있는 남색 치마 또는 생활복 남색 반바지를 착용한다. 단,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하복용 남색 긴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다. 춘추복(간복) : 지정복으로 동복 기준에서 상의 겉옷을 벗은 상태이며, 넥타이를 착용한다.

2. 교복의 착용은 다음의 시기를 권장하되 자율적으로 착용한다.

가. 신입생(1학년)의 경우 하복부터 착용한다.

나. 교복의 착용 시기로 동복은 11월초~4월말, 하복은 6월초~9월 중순, 춘추복은 5월 및 9월 중순~10월을 권장하되, 당시의 날씨 상황이나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

로 착용한다.

3. 실내에서는 실내용 운동화나 슬리퍼, 등하교시와 운동장에서는 운동화를 신는다.
- ③ 용모는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1. 피부화장의 경우 선크림은 허용하되, 색조화장(아이라인, 마스카라, 매니큐어 등)은 아니 된다.
 2. 틴트 및 립밤의 경우 연한 오렌지색, 핑크색으로 제한한다.
- ④ 복장에서 교표는 소정의 위치에 부착하되 명찰은 교내에서 목걸이형이나 집게형을 패용한다, 또한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장식물을 패용하지 않는다.
 1. 장신구로서 귀고리는 부착형 1개, 반지는 고리형 1개, 목걸이는 사회통념적인 일반 수준에서 패용한다.

제24조(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11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학교는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⑧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 ⑨ 학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6조(전자기기 사용)

- ①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교육활동(조·종례 시간, 학교행사, 체험 활동 등) 중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휴대폰 보관함(가방)에 넣어 교무실에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7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 학생회, 총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본교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 ⑧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자치회에서 한다.

제28조(동아리활동)

-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교사를 두고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회에 등록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30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 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인성인권담당 부장, 인성인권담당 교사, 교무기획부장, 해당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참석하도록 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하며, 인성인권담당 부장은 간사가 되어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지정한 인성인권담당 교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31조(학교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학교위원회는 학생의 비행으로 인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인권 담당 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단,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②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2조(의결 정족수)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3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인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게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폭력

제34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5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수업권 침해 및 지도 불응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의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 반복적인 수업 방해나 지도 불응 학생은 원칙적으로 교사(교감 또는 교사)의 동행 하에 교무실이나 인성인권부실로 이동시켜 해당 수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게 할 수 있다.
- ④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되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2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 우
 3. 제22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단, 담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육활동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⑤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최고 1주일 이내로 교내에서의 소지를 금할 수 있다.

제38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근거하여 학생의 비행에 대해 학교위원회의 구성,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춰 운영한다.
- ②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의 기회 보장,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③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 ④ 학교는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 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학교는 징계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⑥ 학교는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학교 내 봉사) : 7일 이내(1일 2시간 기준)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참여 여부는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단계(사회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3단계(특별교육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 한다. 이때 학생은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4단계(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정학습)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인성인권부, 진로상담부,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이수,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때 학부모는 학생과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가. 부적응 학생 및 행동 심리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동반하여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상담 치료, 심리 치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상습 흡연자는 금연 학교 또는 지정 기관에서 금연 시술 및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약물, 알콜 중독자는 의료 기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 등에서 특별교육 상담, 자율학습 등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4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5조(징계의 기준)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징계의 기준에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의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9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흡연 및 음주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적용한다. '흡연학생'이란 담배

또는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교내·외에서 흡연 중 발견된 자를 칭하며, ‘음주학생’은 교내·외에서 음주를 한 학생을 말한다.

1. 1회 적발된 경우, 훈계 및 학부모를 소환하여 담임교사, 교장선생님과 상담한다.
 2. 2회 적발된 경우, 교내봉사에 처하거나 금연 프로그램 또는 전문상담 클리닉 등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다.
 3. 3회 적발된 경우, 사회봉사에 처하거나 금연 프로그램 또는 전문상담 클리닉 등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다.
 4. 4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학교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수업 방해나 지도 불응 학생은 원칙적으로 교실에서 격리를 시키되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적용한다.
1. 1회의 경우, 훈계 및 상담으로 인성인권부나 담임교사에 의해 보호자를 소환하여 교장선생님과 상담한다.
 2. 2회의 경우, 교내봉사에 처하거나 전문상담 클리닉 등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다.
 3. 3회의 경우, 사회봉사에 처하거나 전문상담 클리닉 등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다.
 4. 4회의 경우,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처하거나 전문상담 클리닉 등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다.
 5. 5회 이상인 경우 학교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④ 금품 갈취 및 신체적 폭행 등 학교폭력에 의한 가해 학생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협의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⑤ 기타 학생생활지도 항목 및 징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항	행위 내용	징 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1	교복을 변조하여 2회 이상 지도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학생	◎		
2	제23조의 복장 등 용모, 장신구 등에 대한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학생	◎		
3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대여한 학생		◎	◎
4	일과 중 무단 외출 2회 이상 지도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학생	◎		
5	학교 기물, 게시물 및 공공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	◎	◎
6	음란물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7	미성년자 고용금지업소에 취업,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학생	◎	◎	◎
8	성매매를 사주, 공모하거나 행한 학생		◎	◎
9	고사 중 부정행위를 강요했거나 동조한 학생	◎	◎	
10	시험을 고의로 불응한 학생	◎	◎	
11	고사 불응을 집단으로 주동하거나 선동, 동조한 학생		◎	◎
12	부정행위를 위해 시험문제를 탐지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13	수업이나 교육 중 휴대 전화를 조작하는 행위	◎		
14	금품 및 물품을 빌린 후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학생	◎		
15	사행성 도박 및 사주를 한 학생	◎	◎	◎

항	행위 내용	징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16	보호자의 동행 없이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17	음란물(춘화, 테이프, CD, 서적 등)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학생	◎	◎	
18	음란물을 교내에 회랑케 한 학생	◎	◎	
19	불량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위반한 학생		◎	◎
20	몰래카메라 및 휴대폰을 사용하여 교사의 사생활 등 교권 침해 및 타인의 초상권,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학생	◎	◎	◎
21	징계기준에 따른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은 차상급 징계에 처함	학교위원회의 결정		

⑥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사항은 학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6조(표창의 종류 및 시상)

- ① 모범부문 표창은 공로부문, 선행부문, 효행부문, 봉사부문으로 한다.
 - 1. 공로부문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학생
 - 2. 효행부문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3. 선행부문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
 - 4. 봉사부문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학생
- ② 표창은 정기 시상과 임시 시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정기 시상은 5월(청소년의 달)과 11월(학생의 달), 학년말에 실시한다. 단, 공로부문은 학년 말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④ 임시 시상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체교직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고 학교장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제47조(표창 대상 추천 및 자격)

- ① 담임교사, 비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은 표창 대상 학생을 추천하고, 교무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고 학교장의 결정으로 시상한다. 단, 정기 시상에서 담임교사는 학급당 모범부문(선행부문, 효행부문, 봉사부문) 대상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되 표창 종류는 중복될 수 있다.
- ② 표창 대상 학생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에 처한 노약자, 병약자, 부상자를 보호 조치한 학생
 - 2. 불우한 학생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학생
 - 3. 타인의 범법 행위를 미연에 예방 또는 방지한 학생
 - 4. 교내 및 교실 환경을 정화하는데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인 학생
 - 5. 학생의 신분에 비추어 상당한 가치를 지닌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 6. 소년소녀가장 등 어른을 공경하고 효행 정신을 실천한 학생
 - 7. 교·内外 봉사 활동 실적이 뛰어난 학생

8. 기타 각 항에 상당하는 선행, 봉사, 효행을 실천한 학생
9. 동일학년도에 학교위원회에서 비행으로 인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및 학교폭력에 의해 자치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정읍여자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학생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선거, 또는 학생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⑥ 교원 대표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원 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⑦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한다.
- ⑧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 ⑨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⑩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참석이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⑪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개정안의 발의 및 개정 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5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1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제52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 제·개정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30일 개정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